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정	2004.	6. 1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4- 7호
개정	2006.	5. 3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5호
개정	2007.	2. 2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4호
개정	2008.	7. 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27호
일괄개정	2009.	10. 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45호
개정	2010.	5. 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20호
개정	2011.	9. 2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27호
개정	2013.	3.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3호
개정	2013.	6. 2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5호
개정	2014.	12.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6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이하 “주택우선공급” 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이란 「주택법」 제3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택우선공급”이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 또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을 중소기업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라.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마.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4.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로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은 세대주로 본다.

5.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제3조(우선공급 대상자) ① 주택우선공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우선공급 대상으로 하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한다.
3.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날(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자.

②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업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갬블링 및 베타업
6. 무도장 운영업

제4조(우선공급 대상주택) 주택우선공급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다 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4. 주택관련 법령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제5조(주택의 확보)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방청장 등”이라 한다)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주택우선공급을 위한 주택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공급 대상자 모집 공고) 지방청장 등은 관할지역 내 사업주체가 주택우선공급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우선공급 대상자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택우선공급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우선공급을 받고자 하는 우선공급 대상자는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주택우선공급 확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우선공급을 받고자 하는 우선공급 대상자는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주택우선공급 추천 신청서와 별제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관할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회에 한하여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을 제외한 주택
2. 「주택법」 제2조제3호의4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제8조(주택우선공급 신청에 대한 검토) ① 지방청장 등은 제7조의 신청에 대해 제3조에 규정된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가 확인한다. 다만, 지방청장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징구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 ① 지방청장 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해서 제3조의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지방청장 등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 중 제3조의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주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1. 우선공급 대상자의 중소기업 재직기간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단, 각 목의 합이 5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주택우선공급 신청 당시 근무 중인 기업의 재직기간 : 1년 마다 3점씩 부여

나. 주택우선공급 신청 당시 근무 중인 기업 이전에 중소기업 재직기간 : 1년 마다 2점씩 부여

2. 우선공급 대상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일 경우에는 10점을 부여한다. 다만, 재직 중인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3. 제6조에 따른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근로장려금(이하 “근로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최근년도에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10점을 부여한다.

4. 우선공급 대상자가 수상경력이 있을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단, 각 목의 합이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훈·포장 : 10점

나.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또는 상장 : 8점

다. 장관·차관급 이상 청장·광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 5점

라.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표창 또는 상장 : 3점

5.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기술·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단, 각 목의 합이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는 10점을 부여한다. 다만, 비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의미한다.

나.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한 대한민국 명장·숙련기술전수자는 5점, 우수 숙련기술자는 3점을 부여한다.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은 5점, 기사·산업기사는 4점, 기능사는 3점을 부여한다. 단, 중복 자격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1개만 인정한다.

7.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는 5점을 부여한다.

8. 제2항 각 호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목의 순서대로 추천 순위를 부여한다.

가. 무주택 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나.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제10조(제한) ① 우선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주택을 「주택법」 제41조의2에 따라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② 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될 경우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을 취소한다.

제11조(업무관할)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업무는 주택 건설지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수행한다. 다만, 주택 건설지역이 다수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의 협의에 의해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을 결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1월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함께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5호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을 공고하여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전매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입주자부터 적용한다.

<별지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확인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추천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서약서
- [별지 제4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확인서
- [별지 제5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추천서
- [별지 제5호 서식의 붙임] 배점기준표

【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 청 인	성 명		전 화 번 호 () -	
	생년월일		휴 대 전 화	
	주 소 (우 -)			
소 회 속 사	회 사 명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명		휴 대 전 화	
	업 종	백만원	상 시 근 로 자 수	명
	매 출 액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우 -)			

2. 주택신청내역

지역	지구 (단지명)	전용면적(m ²)	공급면적(m ²)	공급유형
	()			

3. 신청인 중소기업 근무경력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간	근무년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총 근무기간		년 월	

* 중소기업 근무기간 : 이전 근무했던 중소기업 근무경력 모두 작성

본인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2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무주택근로자)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중소기업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 1

2. 서약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청자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일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업체용), 4대 보험 가입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

※ 지방중소기업청 접수 담당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제조업 영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추천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 -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우 -)			
소회 속사	회사명		전화번호 () -	
	대표자명		휴대전화	
	업종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명
	매출액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우 -)			

2. 주택신청내역

지역	지구 (단지명)	전용면적(m ²)	공급면적(m ²)	공급유형
	()			

3. 신청인 중소기업 근무경력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간	근무년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총 근무기간		년 월	

* 중소기업 근무기간 : 이전 근무했던 중소기업 근무경력 모두 작성

5. 기타 사항

구 분	해 당 분 야
5년 이내 수상경력 보유	<input type="checkbox"/> 훈·포장
	<input type="checkbox"/> 대통령, 총리 표창 또는 상장
	<input type="checkbox"/> 장관, 차관급 이상 청장,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input type="checkbox"/>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술·기능인력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명장 또는 숙련기술전수자
	<input type="checkbox"/> 우수 숙련기술자
국가기술험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보유	<input type="checkbox"/> 기술사 및 기능장
	<input type="checkbox"/> 기사, 산업기사
	<input type="checkbox"/> 기능사
지방 중소기업에서 연구전담 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뿌리산업 종사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저소득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소기업 재직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본인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한 무주택근로자로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숙지하고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의한 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중소기업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 1

2. 서약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청자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일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업체용), 4대 보험가입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

5. 분야별 증빙서류

◆ 수상경력보유 : 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 1부 제출(상패 등은 사진 사본으로 제출)

- 유효기간(수상일로부터 기산) : 훈·포장(11년), 대통령 표창·상장(7년), 국무총리 표창·상장(5년), 기타(3년)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술·기능인력 : 대한민국명장 또는 숙련기술자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증서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및 증서 사본 1부

◆ 지방소재 중소기업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연구개발인력 현황(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부

◆ 뿌리산업종사자 : 공장등록증명서 1부

◆ 저소득 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선정 또는 수급증명서 1부

◆ 소기업 재직 근로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업체용), 사업자등록증 1부

※ 지방중소기업청 접수 담당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제조업 영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서약서

1.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 과거에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근거한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사실 및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주택우선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주택 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거나 과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입주자 저축의 해약, 기타 법적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 뒷면의 설명을 읽고 위 서약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뒷면)

1.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2.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1)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2) 85㎡이하의 단독주택
 -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확인서

신 청 인	성 명		전 화 번 호 () -
	생년월일		휴 대 전 화
	주 소 (우 -)		
소 회 속 사	회 사 명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명		휴 대 전 화
	업 종	백만원	상 시 근 로 자 수 명
	매 출 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주 소 (우 -)		

위 사람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로 「주택 공급에 관한규칙」 제32조에 따른 주택우선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지방중소기업청장

【별지 제5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추천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주택우선공급 신청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천하오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택유형	순 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20 년 월 일

○○ 지방중소기업청장

【별지 제5호 서식의 붙임】

배 점 기 준 표			
지 방 청 명		작 성 자	(인)
기 업 명		신 청 자	

항 목	배 점	산정 근거	점수
중소기업 재직기간	50	<input type="checkbox"/> 현 직장 재직기간 : 년 <input type="checkbox"/> 이전 직장 재직기간 : 년	
소기업 여부	10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 10점	
저소득 근로자	10	<input type="checkbox"/> 저소득근로자 : 10점	
수상경력	10	<input type="checkbox"/> 훈·포장 : 10점 <input type="checkbox"/> 대통령·총리 : 8점 <input type="checkbox"/> 장관(청장)·광역자치단체장 : 5점 <input type="checkbox"/>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표창 또는 상장 : 3점	
자격증 보유여부	5	<input type="checkbox"/> 기술사 및 기능장 : 5점 <input type="checkbox"/> 기사·산업기사 : 4점 <input type="checkbox"/> 기능사 : 3점	
기술·기능인력	10	<input type="checkbox"/>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10점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명장·숙련기술전수자 : 5점 <input type="checkbox"/> 우수숙련기술자 : 3점	
뿌리산업 재직 근로자	5	<input type="checkbox"/> 뿌리산업 종사 근로자 : 5점	
합계	100		

20 년 월 일